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9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 내용을업계및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독특한온돌문화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하고, 전기장판의안전성확보와안전기준의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전기장판(K60335-2-17)의전기용품안전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전기장판(K60335-2-17)표. 패드및이와유사한유연성을가진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2.201 용어의정의에 감열발열선을 추가하고, 10.1의 부(-)의 편차를20%로 증가한다.”를 부(-)의 편차를20%로” 변경하고, 사이리스터또는이와유사한제어장치를사용했으로서사용상태의 변화에따라입력전력이변화되어정격을최대값으로표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최대값이 내이어야한다.”를 추가하고, 11.8 표01의 비교 더낮은온도설정에서표면온도가60℃를넘지않는다면, 85℃의최고온도가허용된다.”를 더낮은온도설정에서표면온도가60℃를넘지않는다면, 85℃의온도가 허용된다.”로 변경하고, 표02의 “ 발열체의온도기준80K”를 “ 발열체의온도기준120℃”로 변경하고, 표 102의 “패드표면45K”를 “ 표면 내구김성모포및 매트리스는80℃, 요(장판)은0℃, 모포는65℃, 패드는 65℃”로 변경하며, 표102 비고에a사람과직접 접촉하여사용되는표면의재질이섬유가아닌것은50℃가적용된다.”와 “ b30분 이내에전원이자동으로차단되는것은90℃가허용된다.”라는문구를추가하며, 11.101항에저온화상방지를위하여” 제어기또는코드스위치에는밤새사용할때 추천되는최고온도 설정을적용한다.”를 “ 온도설정온도제어기또는코드스위치의취침용버튼으로한다. 취침용버튼이없는 경우에는밤새사용할때추천되는최고온도로설정한다. 단, 추천되는최고온도설정방법이명확하지않거

나우발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 대로' 변경하며, 11. 101 시험방법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부의 온도는 300mm×300mm×0.5mm 크기의 구리 또는 황동판의 중앙 부분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이 불연 유연부의 아래에서 측정하고, 모포와 매트리스는 유연부의 위에서 측정한다."로 수정하고, 11.101의 감열발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도는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를 "온도는 최초 1시간 동안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후에는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변경하며, 22. 201 구조에 감열발열선의 임피던스 변화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에 적합한 개수의 온도퓨즈, 자동 온도조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와 용하는 자동 스위치를 발열체와 직렬로 발열부의 내부에 균일하게 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감열발열선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온도과승방지장치 설치의 무화 규정인 표 01(발열부의 면적에 따라 8,000cm² 이하는 2개, 8,000cm²-15,000cm²는 3개 이상, 15,000cm²-24,000cm²는 4개 이상, 24,000cm² 초과 3,000cm²만큼 커질 때마다 1 개씩 추가)을 신설하며, 24.201 감열선 균일 특성에 "온도과승방지장치와 감열선을 사용한 것은 그 감열선을 10등분하여 각각의 동작 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평균치에 대한 각각의 편차는 ±10℃ 이내 이어야 한다."를 신설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의 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07. 10. 23.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의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팀 연락처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02-509-7242 (FAX: 02-507-6657)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93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규정에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시설기준및 기술기준고시」를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놀이시설 기준고시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와성능향상및 쾌적한놀이환경조성에필요한어린이놀이시설의부설치 및기술기준을제정하여어린이놀이시설에서어린이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함

2. 주요내용

놀이터내에서사용연령· 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라 처등을 게재토록하는등 놀이시설의일만요건을규정 하고모래중금속오염시험방법을정함

- 조합놀이대에서왜리· 손· 발끼임방지를위한구체적인요건정함
-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철봉· 장출발기구등에필요한최소 확보공간과설치방법에관해규정함
- 바닥은일정수준의충격에견디는모래, 고무등을사용토록하고모래의경우입도, 중금속오염및 두께등에 관해정함
- 실내놀이기구는반드생염처리한자재를사용토록규정하고, 건물내자동연기감지시스템 비상조명을 설치토록규정하는등총10종의놀이시설시설기준및설치기준을제정함

3.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제정(안) 내용

※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위 고시·공고란에 서열람할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509-7238~39, FAX: 02-509-7305)

○ 주소: 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7-205 호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정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 다 음 -

1. 검정기관의명칭및주소: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특별시강남구산587동0)
2. 사업장의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궁내동2
3. 검정분야: 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
4. 검정업무개시일및지정번호: 2007년9월4일(제2007-1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 - 204 호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등) 및 동 시행규칙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 다 음 -

1. 형식승인기관의명칭: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형식승인기관의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궁내동2
3. 지정일자및지정번호: 2007년9월4일(제2007-1호)
4. 형식승인수행범위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